

■ 입찰공고번호 : 제1038호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청도2터널 터널 자동사고감지 시스템 제조·구매(설치포함)

나. 사업내용: “시방서”와 같음

다. 계약기간: 착공일로부터 70일

라. 계약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평가

마. 기초금액: 금 476,850,000원

(추정가격 433,500,000원, 부가세 43,350,000원, 지급자재 0원)

* 기초금액은 설계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 자격 : 아래 사항 모두 충족한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하고 실적 충족되는 업체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0036)과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를 모두 등록한 업체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물품(세부품명류 번호 :4321150102, 컴퓨터서버)에 대해 제조 또는 공급업체를 등록한 업체

라. 국토교통부 지정 ITS 성능평가전담기관에서 실시한 「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 기준」에 의한 돌발상황 검지시스템(터널영상식) 기본성능평가 상급 이상인 성적서를 보유 또는 보유업체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 제출업체

* 당사는 민간기업으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 진단에 속하는 회사 참여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사전 성적서 및 확약서 제출

- 가. 제출 기간 : 2026.09.18. ~ 2026.09.28.까지
- 나. 제출내용 : ITS성능평가 성적서 또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 다. 제출방법 : e-mail 제출(ieech75@dbeway.co.kr, hw@dbeway.co.kr / 양쪽 모두제출)

4.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 가. 가격입찰서 제출 : 2026.09.21. 10:00 ~ 2026.09.29. 10:00(G2B 전자입찰)
- 나. 가격개찰 : 2026.09.29. 11:00 (우리회사 계약담당자 PC)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등 열람

- 가. 본 공고는 **민간발주** 공고입니다.
- 나.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다. 설계도서 등 열람장소 :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ITS시설팀

※주소 : 경남 밀양시 산외면 산외로 42-57

6. 입찰서 제출

- 가. **투찰 전 공사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투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나. 입찰서는 반드시 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동 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할 수 있습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 입찰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부터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라. 가격입찰은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마.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 나.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5/100 이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
- 다.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우리 회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 기준 $\pm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에 번호를 부여하고 추첨하게 하고, 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고,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입찰로서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2.49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 점 이상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납품이행능력 : 추정가격 433,500,000원(VAT제외), 최근 5년내 납품실적 인정

구분	평가요소 기준
동등이상 물품	도로에 설치된 카메라(CCTV 등)가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영상을 분석하여 돌발정보(정지차량, 역주행차량, 보행자) 전체를 자동으로 검지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서버에 전송하여 운영자에게 경보하는 장비의 일체(운영 S/W, 분석서버 등 관련 설비)를 납품한 경우
유사물품	도로에 설치된 카메라(CCTV 등)가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영상을 분석하여 돌발정보(정지차량, 역주행차량, 보행자)의 일부를 자동으로 검지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서버에 전송하여 운영자에게 경보하는 장비의 일체(운영 S/W, 분석서버 등 관련 설비)를 납품한 경우
공통사항	○ 타설비*가 포함된 사업실적은 동등이상 또는 유사물품 부분만 인정 * 동등이상 또는 유사물품과 관련이 없는 다른 종류의 설비 ○ 타설비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서버 등)은 타설비와 동등이상 또는 유사물품의 비율*로 인정 * 비율 산정기준 : 수량 또는 금액 ○ 동등이상 물품과 유사물품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서버 등)은 동등이상 물품과 유사물품의 비율*로 인정 * 비율 산정기준 : 수량 또는 금액 ○ 통신 주관로 및 주케이블은 제외

- 가) 실적증명서 발급 시에는 반드시 해당 물품명, 계약금액,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 받으셔야하며,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실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나) 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첨부서류에 “해당 물품을 납품한 실적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납품완료일자”가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장 감독공무원(감독관)의 연락처를 명기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원본이 확인된 해당 물품의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우리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심사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다. 입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모두 적격심사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시행하여 적격점수가 높은 자를 결정하며, 적격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조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체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산출된 적격심사 결과를 적용함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이전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 기준 자료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개찰 이후에는 별도의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받지 않습니다.

마.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평가 관련사항

-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실시 후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평가를 실시하며 적격심사 통과 업체는 우리회사가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평가 서류를 PDF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교통관리비 포함)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정산합니다.
- 라. 안전관리비(교통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정산합니다.
- 마. 본 입찰의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부가세 제외)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교통관리비)
2,740,509	3,620,979	360,102	1,662,880	1,753,315	27,438,443

- 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사. 준공 시 고용, 산재보험료 등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 우리회사 [계약관리 규정] 제 4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 입찰참가자격 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하여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과 관련된 공고문, 현장설명사항, 시방서 등에 입찰에 관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나.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설계금액과 반드시 동일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현장설명서 등 입찰내용을 확인한 후 입찰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설계서 열람을 한 후 입찰제출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확인 미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명시되어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내용에 대한 해석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릅니다.
- 라. 입찰참가업체의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 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전자계약서 작성)을 체결하고, 계약상 대자는 계약보증금(또는 보험증권)[공사 계약금액의 15%, 용역,구매 계약금액의 10% 기준]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안내 사항

입찰에 관한 문의는 아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조구매(시방서 등)에 관한 사항 : ITS시설팀 이창현☎ 055-350-2663)
- 입찰 및 계약에 관련된 사항 : 관리팀 조현욱(☎ 055-350-2625)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17.

新대구부산고속도로(주) 대표이사

[붙임]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이하 “회사”라 한다)의 청렴 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회사에서 집행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각 입찰유의서 외에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회사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소정서식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회사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 등) ① 회사 계약담당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회사 계약실무자는 별도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사 사업주관부서 관계자는 과업 착수시까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제공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회사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회사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회사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자·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착수)전까지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진도·규모·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 (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회사 관계직원에게 금

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해당업체 윤리강령을 실천하여야 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③ 전자계약체결시에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동 서류를 작성·날인하여 상호 교부, 보관한 것으로 간주한다.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이하 “회사”라 함)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①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회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회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른 회사의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회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의 실천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